

이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2. 4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복합 상가 및 빌딩 임대 수용가에 대한 업종적용이 단일화 되어 수용가의 요금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 일부 미비한 요율체계를 정비코자함

□ 주요골자

-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단독가구들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,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량을 산출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용한다.(제29조3항 신설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단독가구들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,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하되, 세부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월 사용량이 영업용 또는 업무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(이하 “가정용 가구당”이라 한다) 월 사용량이 20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-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당 20톤으로 하고,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량으로 한다.
2.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톤을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은 경우 - 가정용 만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상하수도사업소
임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홍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요금담당 이종설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선형 (644-2592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 (업종의 구분) ①~②(생략) <u>③ 시설</u>	제29조(업종의 구분) ①~②(현행과 같음) <u>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</u> <u>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단</u> <u>독가구들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</u> <u>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20톤으로</u> <u>하고, 그 차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</u> <u>하되, 세부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</u> <u>따라 산정 한다.</u> <u>1. 월 사용량이 영업용 또는 업무용 가구와</u> <u>관계없는 가구당(이하 “가정용가구당” 이</u> <u>라한다)월 사용량이 20톤을 합산한 양보다</u> <u>많은 경우 -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</u> <u>가정당 20톤으로 하고, 그 차량은 영업용</u> <u>또는 업무용 사용량으로 한다.</u> <u>2.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톤을 합</u> <u>산한 양과 같거나 적은 경우 - 가정용만을</u> <u>적용한다.</u>